

의안번호	2211982
의 퇴 인	이용우의원
회 답 일	2025.11.7.
추계번호	25F4247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육아휴직수당 등 비과세 대상 확대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육아휴직수당 등 비과세 대상 확대시 재정수입은 2026년 -34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70억원(연평균 △3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육아휴직 수당 등 비과세 대상 확대 (안 제12조제3호마)	-34	-34	-34	-34	-34	-170	-34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2	안 제12조제3호마목 (비과세소득)	○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- (현행)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등, 「국가공무원법」, 「사립학교법」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,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- (개정안) 육아휴직수당 등 비과세 대상 추가: 「사학연금법」특례적용 교직원이 정관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2조제3호마목 (비과세소득)	0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이 2025년 중 통과되며, 부칙에 의해 동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전제
 - 개정안의 부칙에서 동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, 보육 관련 비과세 소득은 동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
 - 이에 따라 동법은 2025년 중 통과되며 2026.1.1.부터 공포 및 시행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추계
- 월별 육아휴직수당은 월별 비과세 한도인 150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가정
 - 연간 1,800만원의 육아휴직수당 수령하는 것으로 가정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(추계방법) 동 개정안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추가된 대상 인원수에 연간 육아휴직수당을 곱한 후, 2023년 귀속기준 근로자의 실효세율을 곱하여 추정
 - (대상인원수) 기획재정부에 따르면, 육아휴직 비과세 대상이되는 사학연금법 특례적용 교직원(사립학교 아님에도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카이스트 등 연구기관, 국립대학법인, 국립대학병원, 평생교육기관 등의 기관에 종사하는 교직원들)은 2023년 귀속기준 2,889명임
 - (연간 육아휴직 수당) 월별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 150만원을 기준으로 연간 육아휴직수당 환산(1,800만원) 가정
 - (실효세율) 2023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신고자 기준 총급여대비 유효세율(6.45%) 적용

4. 세수효과 요약

- 육아휴직수당 등 비과세 대상 확대시 재정수입은 2026년 -34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70억원(연평균 △3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육아휴직 수당 등 비과세 대상 확대 (안 제12조제3호마)	-34	-34	-34	-34	-34	-170	-34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강민지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민지	02-6788-4746	min1231@assembly.go.kr